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조상품 유통 근절 책임 부여>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22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안 제114조의2 신설) ····· 4

2. 과태료(안 제237조제1항 신설) ····· 12

※ 참고자료 ····· 14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9.
3. 회부연월일 : 2024. 7. 2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

을 잃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소비자는 거래 온라인플랫폼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플랫폼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1항 신설).

나.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

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114조의2제5항 신설).

라.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7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안 제114조의2 신설)

개정안은 위조상품 유통[1]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2]에게 모니터링 등의 책무를, 특허청장에게 사실 조사 등의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의2 신설).

구체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무**로 ①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과, ②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 정지가 있으며, ③ 동 조치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장의 책무로, ① 임시조치 결과 통보에 대한 특허청장의 사실 여부 조사 및 필요한 조치 권고, ②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시정조치 및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을 규정하고 있음.

---

1)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행위를 말함.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함.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2.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②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침해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상품판매의 중단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표 보호 목적[3]의 일환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 상표권자의 보호 및 침해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 침해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최근 5년간 상표권 침해 신고·제보건수를 보면, 오프라인 제보는 연평균 250건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제보는 오프라인 대비 31.6배가 많은 연평균 7,907건이나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상표권 침해 신고·제보건수

(단위 : 건)

구분	’19	’20	’21	’22	’23	5년평균
오프라인 제보	203	242	238	295	272	250
온라인 제보	6,661	16,693	7,139	5,128	3,913	7,907
합계	6,864	16,935	7,377	5,423	4,185	8,157

자료: 특허청

또한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건에서 2023년 19만건으로, 매년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4].

3)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사업개요

[표 3] 연도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21,536	134,255	171,606	181,131	198,853

자료: 특허청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표권 등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5], 온라인상의 상품 판매매개자에게도 상표권 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대법원 판례[6]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책임[7] 등에 근거하여 오픈마켓[8] 운영자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 방지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에서의 상품 판매를 매개하는 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

5)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거래 증가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판매방식이 교묘해짐 상거래플랫폼이 아닌 SNS, 카페·블로그 등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판매 제재 이후 다른 채널을 통해 재판매하는 상습판매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출처: 특허청의 2021년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사업 계획 보고서)

6) **(대법원 2010마817)** 오픈마켓 운영자는 ①상표권 침해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의 삭제·차단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고 ③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됨.
참고자료 2.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관련 판례

7)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8)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운영 형식(문상일 외(2015), “온·오프라인 시장 융합과 경쟁정책 이슈 분석 연구”)을 말함. 출처: 나무위키

한편,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9]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위조상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10]에게 위조상품 유통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 의무 등의 책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첫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판매중지 등의 조치사항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11]은 상표권 등에 관한 전문성과 권한이 부족[12]한 이들에게는 과도한 부담 및 규제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9) 오픈마켓·포털·SNS를 모니터링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삭제 조치
참고자료 1.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사업개요

10)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품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런 업체에는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블로그나 카페 등 SNS 계정을 통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11)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무**로 ①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과, ②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정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12)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이들에게 상표권 침해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즉,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권리자의 요구 없이도 선제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과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될 수 있음[13].

현재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또는 특허청 등 위조상품 단속기관과의 협력이나 동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조상품 모니터링이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14].

둘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임시조치 후에 특허청장에게 통보 및 조치 등[15]과 관련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유출[16] 및 분쟁 우려가[17], 특허청 입장에서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과도한 행정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3) 또한 관련 단체(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비현실적인 규제이고, ▲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온라인 상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14)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청 등 위조상품 단속기관, 상표권 보유기업 및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2014. 5월 출범)(*)를 운영하고 있고, 특허청은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위조상품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협의회에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있음.

(*)참고자료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현황

15) 임시조치 결과 통보에 대한 특허청장의 사실 여부 조사 및 필요한 조치 권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시정조치 및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상표법 개정안 제114조의2제2항~제5항

16) 다수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① 개인정보 보호법, ② 정보통신망법, ③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청장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률간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

17)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법원이 상표권 등의 침해를 판단하기 전 침해가 의심되는 판매자의 게시글을 적발하고 판매 중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임.

이와 관련된 **특허청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4]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기관	주요 의견
특허청	(모니터링 의무 부여) 인력·기술적 한계, 非전문가의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
	(특허청장 조치)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과도한 행정부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과의 관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법체계 고려 필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모니터링 의무 부여) ▲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비현실적인 규제, ▲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온라인 상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 등 발생
	(특허청장에게 조치 통보 등)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률간 충돌 문제, ▲ 특허청장의 요청으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행동규범은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

참고로,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18] 운영자에게 사전 모니터링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는 없으나, EU 등 주요국에서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침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19][20].

18) 오픈마켓, 망 서비스 제공자,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19) 참고자료 4. 주요국의 규제 현황
20) 특허청은 실제 권리자의 주의의무 외에도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노력 또한 필요하므로, 상표권자의 신고에 기반한 판매중단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임.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조상품 게시물을 적발하여 위조상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시물이 광범위하여 이들에게 경제적·기술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권리자 아닌 사람이 게시물 대상으로 상표권 등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과 유사하게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 조치 의무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22].

---

21) 의안번호 제2202513호, 고동진의원 등 19인 발의(2024.8.2.)
22) 또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은 21대국회에 다수 발의되었으며, 이 중 일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참고자료 5.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부여 관련 법안 발의 현황(21대)

2. 과태료(안 제237조제1항 신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1항 신설).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7조(과태료) <신 설>	제237조(과태료) ① 제1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집행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행정상의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다만, 앞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태료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59

※ 참고자료

1.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사업개요

o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9년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을 운영 중

* 예산현황(백만원) : ('19년·'20년) 1,050 → ('21년~'23년) 1,578 → ('24년) 1,609

o 「**재택모니터링단**」은 위조상품 증거수집하는 **재택인력** 및 증거 유효성을 검토하고 판매중지 요청하는 **관리인력**으로 구성

* ('24년) 152명(재택 145명, 관리 7명)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업무절차 >

재택인력	관리인력		
정보수집·채증	유효성 검증	판매중지 요청	처리확인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정보 조사 및 증거 확보	▪ 사이트 재확인 및 채증 적합성 확인 ▪ 재택인력에 확인 결과 통지 및 보완 요청	▪ 온라인 사업자에 판매중지 요청	▪ 최종 제재 여부 확인 및 DB구축

- 위조상품 지칭 키워드(예: 레플리카,미러급 등) 검색을 통해 오픈마켓, 포털, SNS 대상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

< 연도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

구분	'19	'20	'21	'22	'23	합계
단속실적(건)	121,536	126,542	171,606	181,131	198,853	799,668

< 온라인 플랫폼사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

(2024년 상반기 기준, 단위: 건)

구분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합 계
단속실적(건)	-	33,263	45,077	**78,340**

* 4~5월은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포털, SNS 대상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오픈마켓은 6월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7월부터 제재실적 발생(모니터링단 비활동 기간은 보호원 전문인력이 오픈마켓 모니터링 실시)

2.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현황

□ 일반 현황

○ **(목적)**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한 상표권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14년 5월 출범(특허청, 상표권자, 오픈마켓·포털사이트 등 46개 기업·기관)

○ **(구성)** 정부·유관기관, 상표권자, 온라인사업자 등 87**개 기관** 및 **기업**

* [참고]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구성원(2023.7. 기준)

구분	참여 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6개 기관)
상표권자	코오롱인더스트리F&C(주), LG전자, CJ, 아모레퍼시픽 등(58개사)
온라인 플랫폼	11번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카카오, 티몬, 헬로마켓,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롯데ON, 씨제이이엔엠, 이마트, 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중고나라, SSG.COM, 브랜디, 당근마켓(23개사)

□ 주요 활동

○ **(단속협력)** 특허청·상표권자·온라인사업자·보호원 등이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감시** 및 **합동단속** 실시

*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과 위조상품 게시물 제재 협력(연중 상시)

*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서울 중구 등 주요 위조상품 유통지역 8회이상

○ **(협력모니터링)**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이 빈발한 위조상품에 대해 상표권자, 온라인사업자, 보호원의 집중 **모니터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확산 방지**

* 매년 2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624,623건 제재('16~22년), 소비자 피해예방액 약 2조 6,951억원

○ **(정기·수시 간담회)** 협의회 운영, 단속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위조상품 단속정보 등 **정기·수시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등 협의

* 매년 4회 이상 개최

○ **(지재권보호 교육)** 협의회 구성기업을 대상으로 **유통빈발 위조상품·브랜드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위조상품 유통방지** 관련 교육

* ('14~15)티몬 MD 교육, ('17)옥션·G마켓 판매자 교육, ('18~19)티몬 신입 MD 교육

4. 주요국의 규제 현황

□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 **(개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상표권 침해**에도 적용

* 오픈마켓, 망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포함

○ '22. 11. 16 발효, **'24. 2. 17 EU 회원국에 완전히 적용**

○ **(주요 내용)**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시,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하면 **상표권 침해 책임 면제**

- **(사전 모니터링)** 일반적·사전적인 모니터링 의무 면제

□ 미국의 샵 세이프 법안(SHOP SAFE Act)

○ **위조상표 유통**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상표법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관련 상품 한해 적용**

○ **'20, '21년에 발의되었으나 폐기되고, '23년에 다시 발의되어 계류 중**

온라인 플랫폼 주요 면책요건	
① 국내대리인 지정	외국기업(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지정·등록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확인할 의무
② 침해통지 창구	침해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연락처 공시의무
③ 사전검토 기회	상표권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목록 사전·무상 검토 기회 제공
④ 침해발생시 면책	침해사실을 인지(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한 경우 즉시삭제
⑤ 반복침해자 퇴출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자 퇴출(조사 후 복구 가능)
⑥ 재발방지 검토	상표권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무상 검토 기회 제공

□ 중국

○ **전자상거래법**에 플랫폼 운영자 **조치의무와 책임** 등 규정

* 권리자가 자신의 지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통지 가능

- 온라인플랫폼은 지식재산권자의 **침해 통지**가 있을 경우, **차단 등 필요한 조치의무**가 있으며(notice & takedown), **미조치시 연대책임**

5.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부여 관련 법안 발의 현황(21대)

구분	발의의원 (발의일)	책무부담 사업자	주요내용	제재 규정	비고
상표법 개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2020.7.23.)	온라인 서비스제 공자	o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기 만료 폐기
	김경만의원 등 10인 (2020.9.11.)	상품판매 매개자	o 상품판매매개자가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형사벌 부과 o 상품판매매개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제한	벌칙 (침해죄)	〃
	최승재의원 등 10인 (2022.6.30.)	온라인 상품판매 매개자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의무 부여	과태료 (의무 불이행)	〃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3.7.3.)	통신판매 중개업자	o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표권 등 침해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 의무 부여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과태료 (의무 불이행)	〃
	이인선의원 등 10인 (2023.11.15.)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 중개업자	o 특허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표권 위반사항 통보 및 조치요청 근거 마련	과태료 (의무 불이행)	〃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2023.7.21.)	통신판매 중개업자	o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경쟁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조치 의무 부여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과태료 (의무 불이행)	〃